

의안번호	제439호
의결 연월일	2012년 12월 20일 (제 316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12월 4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9

제출연월일 : 2012년 12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도정현안 및 소방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등 정원과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조정 : 2,969명 → 3,028명 (+59명) (안 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75명 → 1,460명 (△15명)
 - 소방공무원의 정원 : 1,382명 → 1,456명 (+74명)
-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별표 2)
 -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총정원 감소에 따른 직급별 비율조정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현재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조정	1%이내	11%이내	30%이내	34%이내	24%이상
증감	-	+4%	+8%	+12%	△24%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별표 3)
 - 일반직 20명 증원 (5급이하 +20명)
 - 별정직 1명 감원 (5급상당이하 △1명)
 - 소방직 74명 증원 (소방정 +1명, 소방령이하 +73명)
 - 기능직 34명 감원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969”를 “3,028”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75”를 “1,4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382”를 “1,456”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 기능직공무원의 6급란 중 “7%”를 “11%”로, 7급란 중 “22%”를 “30%”로, 8급란 중 “22%”를 “34%”로, 9급란 중 “48%”를 “24%”로 한다.

별표 3 총계란 중 총계 “2,969”를 “3,028”로 하고, 일반직계란 중 총계 “1,140”을 “1,160”으로, 5급이하소계란 중 총계 “1,066”을 “1,086”로 하며, 별정직계란 중 총계 “20”을 “19”로, 5급이하상당소계란 중 총계 “19”를 “18”로 하고, 소방직계란 중 총계 “1,382”를 “1,456”으로, 소방정란 중 총계 “10”을 “11”로, 직속기관 “8”을 “9”로, 소방령이하란 중 총계 “1,372”를 “1,445”로 하며, 기능직계란 중 총계 “221”을 “187”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증원된 일반직공무원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6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75명</p> <p>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382명</p> <p>3.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3,028명----- -----.</p> <p>1. ----- : 1,460명</p> <p>2. ----- ----- : 1,456명</p> <p>3.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2]</p> <p>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생략)</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5급</th> <th style="width: 10%;">6급</th> <th style="width: 10%;">7급</th> <th style="width: 10%;">8급</th> <th style="width: 10%;">9급</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이내</td> <td>7%이내</td> <td>22%이내</td> <td>22%이내</td> <td>46%이상</td> </tr> </tbody> </table> <p>3. ~ 5. (생략)</p>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 이내	22% 이내	22% 이내	46% 이상	<p>[별표 2]</p> <p>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현행과 같음)</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5급</th> <th style="width: 10%;">6급</th> <th style="width: 10%;">7급</th> <th style="width: 10%;">8급</th> <th style="width: 10%;">9급</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이내</td> <td>11%이내</td> <td>30%이내</td> <td>34%이내</td> <td>24%이상</td> </tr> </tbody> </table> <p>3. ~ 5. (현행과 같음)</p>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11% 이내	30% 이내	34% 이내	24% 이상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7% 이내	22% 이내	22% 이내	46% 이상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이내	11% 이내	30% 이내	34% 이내	24% 이상																				

현 행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2,969	-				
∴	∴	-				
일반직계	1,140	-				
∴	∴					
5급이하소계	1,066	-				
별정직계	20	-				
∴	∴	-				
5급상당이하 소계	19	-				
∴	∴	∴				
소방직계	1,382					
소방정	10	2		8		
소방령이하	1,372					
∴	∴	∴				
기능직계	221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출 장 소
총 계	3,028					
∴	∴					
일반직계	1,160	-				
∴	∴					
5급이하소 계	1,086					
별정직계	19	-				
∴	∴					
5급상당이하 소계	18	-				
∴	∴	∴				
소방직계	1,456					
소방정	11	2		9		
소방령이하	1,445					
∴	∴	∴				
기능직계	187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총정원 2,969명 → 3,028명 (+59명)
(일반직 △15명, 소방직 +74명)

2. 비용 추계 결과 : 2,926,424,350원

(단위 : 원)

구 분(예산과목)	추가 소요비용	비 고
총 계	2,926,424,350	
○ 인건비	2,369,501,870	
- 기본급	1,469,093,020	
- 수 당	639,719,670	
- 정액급식비	80,381,600	
- 명절휴가비	145,539,750	
- 연가보상비	34,767,830	
○ 물건비	84,086,800	
- 직급보조비	84,086,800	
○ 이전경비	472,836,030	
- 성과상여금	110,691,650	
- 연금부담금	171,748,220	
- 보전금	59,431,100	
- 퇴직수당부담금	69,701,030	
- 국민건강보험금	61,264,030	